성실한 관세신고는
기업 이미지와 신뢰도를
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여 줍니다

관세상식 쑥쑥! 기업실적 쑥쑥!

관세 위험관리는 성실신고로

관세 성실신고 가이드라인

2014

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CONTENTS

Ⅰ. 통관이전 성실신고

01 _ 무역거래 성실신고는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 ····· 5

02 _ 수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····· 7

Ⅱ. 통관단계 성실신고

03 _ 성실한 수입신고, 통관 후 위험을 줄입니다 ····· 10

04 _ 성실한 관세납부는 수입자의 의무입니다 ····· 12

Ⅲ. 납세성실 이행의 확인

05 _ 신고납부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····· 15

06 _ 관세조사는 성실신고 이행을 확인합니다 ····· 16

07 _ 관세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합니다 ····· 18

08 _ 이런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··· 20

09 _ AEO 공인은 종합심사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····· 21

10 _ 통관 후에도 원산지 적정여부를 검증합니다 ····· 22

Ⅳ. 권리구제 및 관세상담

11 _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····· 24

Ⅰ. 통관이전 성실신고

01 _ 무역거래 성실신고는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.

02 _ 수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.



01 무역거래 성실신고는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.

1. 관세의 성실신고는 스스로 준비하여야 합니다.

-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, 수입자는 수입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, 세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세관장은 통관단계에서 국민보건 · 사회안전 ·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,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.
- 신고오류로 통관 후 관세 등을 추징당하거나 사법처리 등을 받는 경우 수입자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세관의 엄격한 통관 관리로 기업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- 수입자는 이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하여 수입 준비단계부터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관세청 홈페이지, 관세청고객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업체내부 관련 부서와 거래가격, 외환, 통관요건 등 수입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,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관세사 등에게 정확한 수입거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수입자의 성실한 관세신고는 기업의 이미지를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관세당국과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.

2. 무역거래를 준비하면서 관세 성실신고도 준비하세요.



02

수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.

1. 수입하기 전에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으세요.

-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받으면 향후 추징의 위험이 없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합니다.
- 독립 당사자간 거래물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,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드리며, 향후 3년 동안 유효합니다.
-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사전상담을 받거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하세요.

-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품목분류번호(HS code)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이나 수입요건이 달라집니다.
- 정확한 품목분류번호의 기재는 향후 관세의 추징이나 수입요건 미비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며,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
3. 종합인증우수업체(AEO) 공인,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드립니다.

- AEO 공인제도는 국제무역의 안전과 통관의 원활화를 위한 국제규범으로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 보장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기업이미지가 제고됩니다.
- AEO 공인심사는 업체의 자율적 법규준수나 수출입 위험관리 능력의 확인을 위해 법규준수도 · 내부통제 시스템 · 재무건전성 · 안전관리 4개 부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합니다.
- AEO 공인대상은 수출입업체, 관세사와 수출입 관련 보관 · 운송 · 하역 · 주선 · 선박 · 항공 등 물류 공급망 관련 업종이며, 관세청 UNI-PASS를 통하여 공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관세청장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여부를 통보하며, 공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

4. 원산지 사전심사로 안정적인 FTA 관세 혜택을 받으세요.

-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나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자유무역협정(FTA)입니다.
- FTA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이 FTA체결국을 원산지로 한다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며, 수입 전에 원산지를 심사받으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.
-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하고, 처리기간은 90일로 물품 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



Ⅱ. 통관단계 성실신고

03 _ 성실한 수입신고, 통관 후 위험을 줄입니다.

04 _ 성실한 관세납부는 수입자의 의무입니다.

03 성실한 수입신고, 통관 후 위험을 줄입니다.

1.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.

-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하여 화주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 등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.
- 수입신고서를 전송한 후 수입신고에 필요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, 송품장, 포장명세서, 가격신고서, 수입요건확인서류, 원산지증명서, 감면(용도세율)적용신청서 등을 UNI-PASS를 통하여 전자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- 식품, 의약품, 전기용품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하여 안전성 · 적합성의 확인이 요구되는 물품은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통관 후 자유롭게 사용 · 소비할 수 있습니다.
-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며,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외는 자율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
3. 수입물품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
- 정당한 생산자의 보호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정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-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 표시, 허위 표시 등 표시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나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가격신고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입니다.

-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와 함께 거래가격 관련 서류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신고가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· 중개료, 비정상 할인금액, 생산지원비용, 권리사용료, 수입 후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, 운임 · 보험료 · 운송관련 비용 등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.
- 세관장이 세액을 심사한 결과 신고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관세를 부과(추징)할 수 있습니다.

5.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.

-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신청(6개월 이내), 수정신고,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6. 물품에 따라,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집니다.

- 기본적으로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FTA협정관세, 양허관세 등과 같이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.
-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번호와 현행 적용 관세율 그리고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추천서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04 성실한 관세납부는 수입자의 의무입니다.

1. 다양한 관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원칙이나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월별납부제도(같은 달 납부건을 일괄하여 말일에 납부),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용원재료 수입 관세와 수출 환급액을 정산하는 일괄납부제도(6개월 이내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5일에 납부)가 있습니다.
- 그리고, 천재지변,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기업이 어려울 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 (1년 이내) 또는 분할납부제도(1년 6회 이내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2. 납세신고 오류는 빨리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- 신고가격이나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때 신속하게 납세신고를 정정하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
<table>
<tr><th>사 유</th><th>정 정</th><th>보 정</th><th>수 정</th></tr>
<tr><td>과 소</td><td rowspan="3">• (기한) 당초 납부기한
• (가산세) 없음</td><td>• (기한) 납부후 6개월 이내
• (가산세) 없음 (보정이자 부과)</td><td>• (기한) 납부후 6개월 이후
• (가산세) 있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과 다</td><td colspan="2">경 정 청 구</td></tr>
<tr><td>· (청구)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
· (결정)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3. 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-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.
- 관세 환급 신청은 환급대상 원재료로 제조 · 가공한 생산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하고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


4.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기간 세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.

- 용도세율 또는 관세감면을 받거나 관세 분할납부 중에 있는 물품은 관세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.
- 사후관리 대상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은 대상에 따라 3월부터 5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며, 사후관리 기간 중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거나 잔여 관세(분할납부)를 일괄 징수합니다.
- 따라서, 수입자가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수입당시 신고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, 물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멸실 · 폐기 ·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

Ⅲ. 납세 성실이행의 확인

05 _ 신고납부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.

06 _ 관세조사는 성실신고 이행을 확인합니다.

07 _ 관세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합니다.

08 _ 이런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.

09 _ AEO 공인은 종합심사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.

10 _ 통관 후에도 원산지 적정여부를 검증합니다.

05 신고납부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.

1. 가산세 부담없이 신고납부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- 보정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-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점검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2.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부족세액에 보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보정이자는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34/10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3. 보정신청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합니다.

- 보정신청 내용이 제출하는 자료와 사실이 다른 경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이 기각됩니다.
- 납세자가 스스로 보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납세자에게 보정신청할 것을 통지합니다.
- 보정신청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보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과세처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.

06 관세조사는 성실신고 이행을 확인합니다.

1.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.

- 관세법, 외국환거래법,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,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신고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세금탈루, 수출입관련 의무위반 등 특정사안만 심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및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2. 관세조사는 기업의 관세관련 모든 분야를 심사합니다.

-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
- 수출입에 관한 허가 · 승인 · 추천 등의 요건 구비여부
-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 · 규격 · 수량 · 중량 등 수출입 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소요량계산을 포함한 관세 환급에 관한 사항
-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
-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
-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
-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
- 기타 통관, 외국환거래 및 수출입물품 관련 법령 위반사항

3.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조사방법은 다릅니다.

-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, 일정규모 이상(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) 수입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'법인심사'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'기획 심사'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기준 유지 및 법규준수 수준 심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 활동에 중점을 두는 '종합심사'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4. 관세조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사전통지	• 심사개시 10일 전까지「기업심사 통지서」를 송달합니다. • 기업심사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심사개시	•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. • 「납세자권리헌장」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. • 조사공무원과 함께「청렴서약서」를 작성합니다.
심사진행	•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• 「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」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.
심사종료	• 예정된 심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. (다만,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.) •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.
결과통지	• 「기업심사 결과 통지서」를 송달합니다. •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「과세전적부심사」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고지서 발부	• 「납부고지서」를 발송합니다. •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07 관세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합니다.

1. 관세조사 대상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
○ 관세조사 대상은 관세법 제110조의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한 「법인 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.

정 기 선정기준

-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
- 장기(최근 4년 이상)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
-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

수 시 선정기준

- 신고, 신청, 과세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
-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
-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 인정 자료가 있는 경우

2. 관세조사 전에 「관세조사 일정」을 안내합니다.

○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세조사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관세조사 개시 10일전에 심사기간, 심사사유, 심사분야, 심사 대상기간 등을 기재한 「기업 심사 통지서」를 송부합니다.

3. 부득이한 경우 조사착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천재지변 기타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심사 착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원활한 관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관세조사를 시작하면서 '납세자권리헌장'을 설명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이 함께 '청렴협약서'를 작성합니다.
- 자료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는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며, 언제든지 관세조사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관세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나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5. 관세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합니다.

- 관세조사기간은 해당 업체의 수출입규모, 조사인원 · 방법 · 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일 이내로 결정하여 실시합니다.
- 다만, 해당 업체가 자료제출 지연 또는 조사를 기피하거나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더 이상 조사진행이 곤란한 때에는 조사를 중지한 후 중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.

6. 관세조사는 관세오류 예방을 위한 기회입니다.

- 관세조사가 종료되면 관세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'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'을 실시합니다.
- 납세자는 내부통제 또는 세관과 납세협력을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반복적인 관세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08 이런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.

1.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기본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「관세법」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*을 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.

*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(관세법§28②)하는 경우, 관세법상 보정(관세법 §38의2①②) · 수정(관세법 §38의3①) · 경정청구(관세법 §38의3②③)하는 경우,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(관세법 §38의4①)의 경우, 관세를 환급(관세법 §46)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(관세법 §47)하는 경우, 계약상이 환급(관세법 §106)의 경우

2.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.

○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,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.

①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

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

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

○ 다만, 위 '①,②'의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등에는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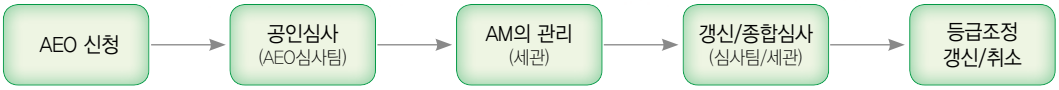
09 AEO 공인은 종합심사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.

1. AEO 공인업체마다 세관 파트너(AM)를 지정합니다.

- AEO 공인업체마다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(AM; Account Management)을 파트너로 지정하여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법규준수 향상 등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.
- AM은 수시로 공인업체의 법규준수 수준을 진단하고 오류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.

2. AEO 공인 유효기간(3년) 만료전에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.

- AEO 공인 및 종합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, 종합심사는 관세조사와 달리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

- AEO 최초 공인 후 유효기간 3년 이내에 종합심사를 실시하며, 이후부터는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4~5년으로 연장됩니다.

3. 종합심사는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업무를 개선합니다.

- 종합심사는 AEO 공인기준 및 각종 법규준수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등급조정, 기간갱신, 공인취소 등 결정을 합니다.

  ※ AEO 공인등급은 A, AA, AAA 3등급으로 구분, 각 등급별 관세행정 혜택 차별 부여

- 종합심사의 목적은 AEO 공인업체의 관세오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 개선과 등급조정 및 기간갱신에 있습니다.

10 통관 후에도 원산지 적정여부를 검증합니다.

1. 적정한 원산지 표시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.

-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지워지지 않고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는 관세청, 시 · 도지사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(3억원 이하), 과태료(1천만원 이하), 형사처벌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원산지조사에 따라 FTA의 효과가 달라집니다.

- 원산지조사란 FTA 공정무역질서 확립, 불법 우회수입 차단, 국내취약산업보호 등을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원산지조사는 관세당국이 상대국 직접 방문 또는 검증의뢰 할 수 있으며, 서면이나 현지조사 방식으로 수행합니다.
- 원산지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FTA협정관세가 배제되며, 원산지조사 거부 · 방해 ·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원산지 허위 증명, 거짓 제출,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은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Ⅳ. 권리구제 및 관세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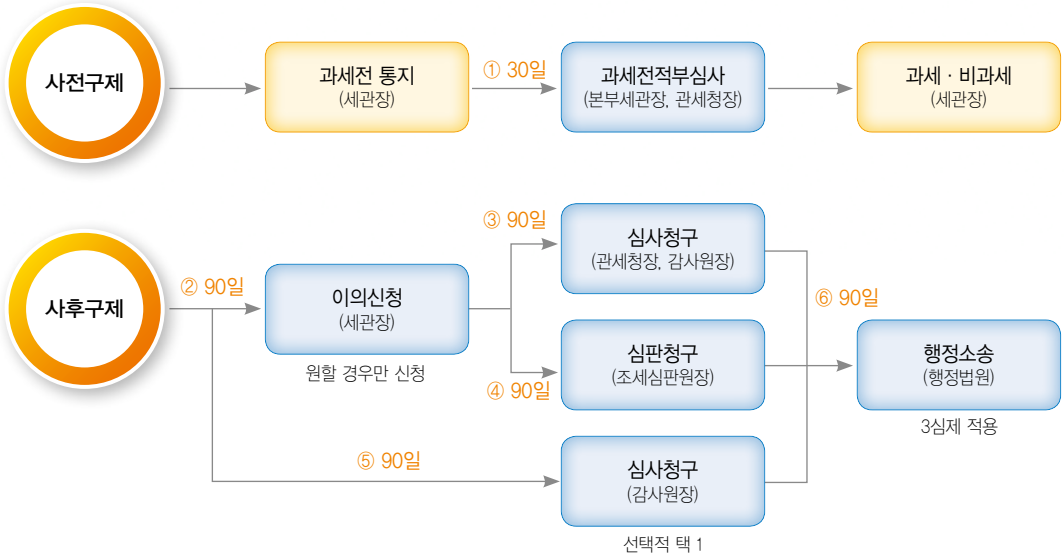
11 _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



11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

1. 억울한 관세행정 처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 관세조사 과정 또는 관세조사 종료 후에도 세관공무원이 발견한 오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드립니다.
-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관세행정 권리구제」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

구제절차	청구기간	신청기관	결정기간	비 고
① 과세전적부심사	30일	본부세관장 관세청장	30일	(관세청장) 5억원 이상
② 이의신청	90일	세관장	30일	원하는 경우
③ 심사청구	90일	관세청장	90일	선택적 택1
④ 감사원심사청구	90일	감사원장	3개월	
⑤ 심판청구	90일	조세심판원장	90일	
⑥ 행정소송	90일	행정법원	–	3심제

2. 관세행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하여 드립니다.

○ 관세청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를 방문하시면 관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○ 수입준비단계에서의 성실신고를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도	상담기관	상담전화	홈페이지
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	관세평가분류원(관세평가과)	042-714-7505	cvcni.customs.go.kr
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	관세평가분류원(품목분류1과)	042-714-7528	
FTA 원산지 사전심사제도	관세평가분류원(품목분류1과)	042-714-7523	
AEO 제도	한국AEO진흥협회	02-701-3325	www.aeo.or.kr

○ 관세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『관세청고객지원센터』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대표전화 : (국내) 1577-8577 (국외)82-2-3438-5199

단축번호	1	2	3	4	5	6	7
분 야	FTA	수입통관	개인물품	품목분류	평가감면	수출환급	기 타

▶ 홈페이지 : call.customs.go.kr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www.customs.go.kr

※ 본 책자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국
법인심사과 (042-481-7986)로 연락 바랍니다.